

대구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간

연구교류 협정서

대구대학교(이하 “대구대”라 함)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DGIST”라 함) 간 상호 연구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와 DGIST 간의 교류를 통하여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내용) 대구대와 DGIST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유치
2. 공동연구 수행
3. 연구 인력의 교류
4. 연구정보 교류 및 학술세미나 개최
5.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공동사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본 협정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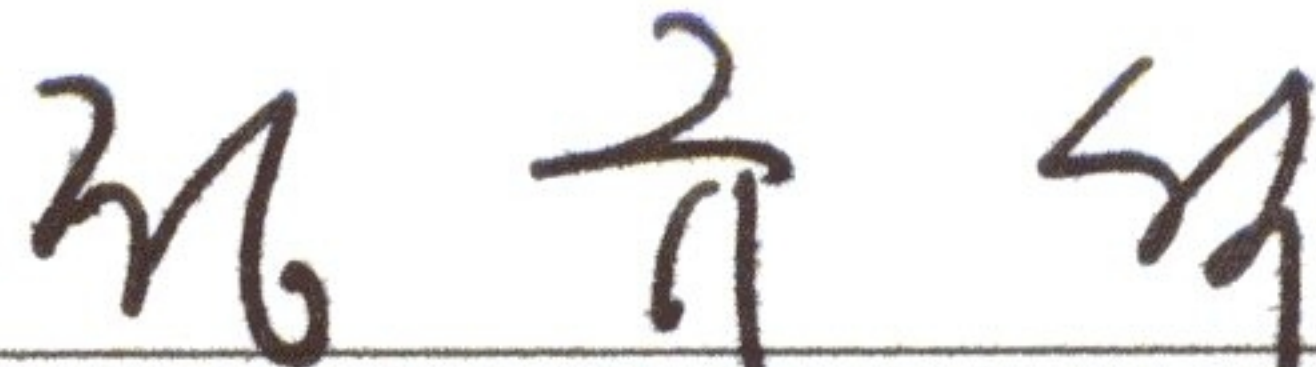
2.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정서의 효력) 1.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

2.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007. 4. 23.


대구대학교
총장 이용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정규석